

2024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유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유경제 확산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년 2월 23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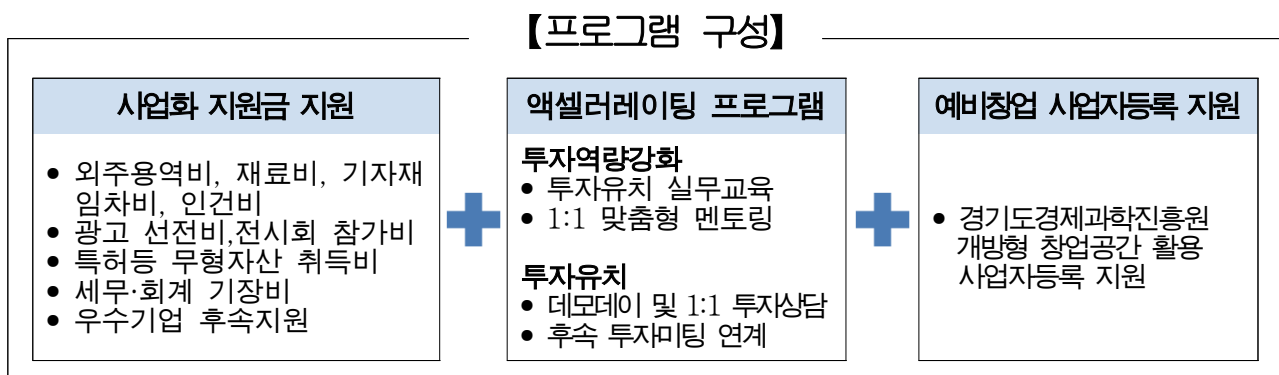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2. 23(금) ~ 2024. 3. 18(월) 23:50까지
 - 모집대상 : 공유경제를 모델로 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단체)
또는 예비창업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한 경기도 소재(본점) 중소기업 및 단체
 - ※ 창업일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을,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년월일’ 기준으로 함
 -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 : 2017. 2. 23~ 창업
 - ② 경기도에서 공유경제 비즈니스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개인)
 - ※ 사업지원 협약일 종료前 신규 사업자 설립(※협약기간내 경기도 사업자 유지 및 대표유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자
- ※ 소셜벤처 판별기업 가점 3점 부여
-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범 위반 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22호)에서 정한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 11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는 감점 20%

- 모집규모 : 7개사
- 지원금액 : 최대 2,000~5,000만원 지원(자부담 20%이상)
-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금 최대 2,000~5,000만원 차등지원
 -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를 통한 기업역량강화 및 투자유치 지원
 - 데모데이 경연 최우수 기업 인센티브 1,000만원 추가지원
 -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지원 (※개방형 창업공간 활용)
 - 우수기업 도지사상표창 및 후속지원 등

2 세부 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 지원 프로그램



공유기업 유형 및 사례

■ **공유경제 정의** :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 **공유자원에 따른 분류**

- **공간공유** : 주차장, 숙박, 회의 및 비즈니스 공간, 주거 등
- **물품·물건공유** : 의류, 장난감, 가전제품 등 생활용품 공유
- **재능·경험·정보서비스** : 온라인교육, 재능, 지식서비스, 도서 공유 등
- **모빌리티공유** : 차량 공유, 자전거 공유, 차량운송 연계 공유 등

■ **사례**

- **승차공유** : 승차방향이 같은 택시 탑승객이 어플을 통하여 동승한후 택시요금을 반반 나누어 내는 승차공유를 통해 탑승객은 요금절감의 효과와 택시운전기사는 한번에 두명의 승객을 태워 수익창출
- **주방공유** :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방공간을 개별사업자가 필요한 때에 공간 셰어링뿐만아니라 양질의 식자재 공동구매를 통하여 창업 및 운영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창출

① 사업화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2,000~5,000만원 사업화지원금 지원(자부담 20% 이상)
- 지원항목별 지원범위 및 한도

비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외주용역비	• 선정된 과제(앱개발, 시금형, 목업, 샘플제작, 디자인 등) 개발 관련 외주용역 또는 광고선전 외주용역비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재료비	• 시제품 제작 및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비 등 ※ 소프트웨어 구입(사무용 소프트웨어 MS-Office, 한글, 백신 프로그램 등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제외)	
기자재 임차비	• 과제(서비스)개발을 위한 서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장비대여 ※ 해당 과제(서비스)개발을 위해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	
인건비	• 참여자의 선정 과제(서비스) 개발(앱개발, 시금형, 목업, 샘플제작, 디자인 등)을 위한 인건비 - 협약기간 내 선정된 과제(서비스)와 관련된 신규 고용인력 (4대보험 가입직원 限해) - 대표자 및 일반 관리직원 인건비는 제외 - 타 사업 고용 인건비 관련 지원금 혜택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 배정 범위 내 1인당 월300만원 한도 (기본급 80%)
광고 선전비	• 홍보인쇄물 (카탈로그, 리플렛 등) 제작비용 • BI/CI 디자인 비용 • 온라인 마케팅(키워드/배너광고, 홈페이지제작 등) ※ 단, 홈페이지 제작에 한해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원금 배정 30%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전시회 참가비	• 협약기간 내 참여자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전시회 부스임차비 및 부대시설/장비 임대비 등)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과제(서비스)관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 협약기간내 출원 등록건에 限하여 선행기술조사비 (50만원 내), 우선 심사청구비, 등록비용 지원 (※ 성공 보수 지원 제외)	지원금 배정 범위 내 (공급가액의 80%)
세무/회계 기장비	• 세무/회계 기장 대행비 지원(최대 1백만원지원)	최대 1백만원 한도 (공급가액의 80%)

※ 협약체결후 3개월 경과후 사업화 지원금 100% 집행시 조기지원 종료 신청 가능(※ 단, 별도 프로그램 참여 및 보고의무는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

② 투자유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 기업 역량강화

- 민간 전문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 실무교육, 1:1 맞춤형 멘토링
- 시기/장소 : 5~8월(예정) / 수원(예정)

※ 기업별 성장단계 및 수요에 따라 BM 멘토링 또는 IR 멘토링 중 기업 선택

○ 투자유치 지원

- IR 데모데이 : 온라인쇼케이스 제작 및 피드백 보고서 제공
 - 시기/장소 : 10월(예정) / 판교(예정)
- 1:1 투자사 매칭 및 상담(후속 투자 상담 연계) 지원
 - 시기/장소 : 10월~11월(예정) / 투자사 회의실

※ 시기와 장소는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③ 데모데이 경연 최우수 기업 인센티브 1,000만원 추가 지원

- 데모데이 IR pitching 최우수 기업 사업화지원금 1,000만원 추가 지원

※ 신규기업 사업화지원금 집행 항목 사용

④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 지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개방형 공동창업실을 활용한 사업자등록 지원
- 협약기간 내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며 협약종료후 6개월까지 연장가능
(※ 단, 연장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장 주소 이전)

3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3일(금) ~ 3월 18일(월), 23:50까지

○ 신청방법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http://www.gsp.or.kr) 온라인 신청

- 경기스타트업플랫폼(www.gsp.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및 필수 제출서류를 모두 완료해야만 최종 접수됨

[My space \(마이스페이스홈\)](#)→[활동이력](#)→[지원사업란](#)에서 최종 신청여부 필히 확인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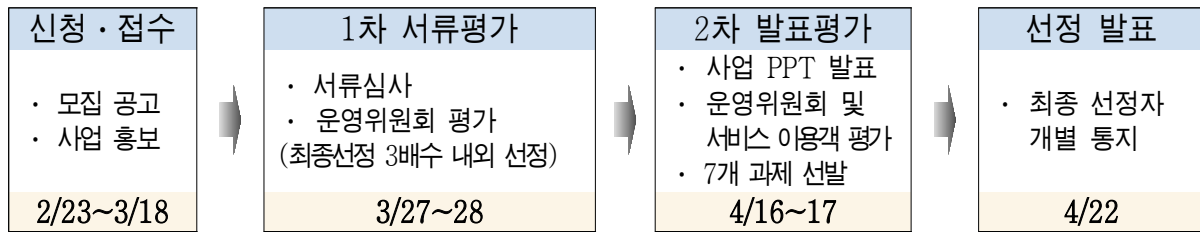
구분	제출 서류
기업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2호] · 기업 소개서 [서식4호], 비즈니스 개략도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5호] 1부(필수) ·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6호] ·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여부 약약서[서식7호]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필수) · 청렴서약서 [서식11호] 1부(필수)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발급가능한 해) ·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발급가능한 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 소셜벤처판별 통지서(해당기업 限): 제출시 가점3점 부여 · 창업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10~14일 정도 소요, 지원 사업신청전 사전 발급 신청 요망
비영리 민간 단체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2호] · 단체 소개서 [서식3호], 비즈니스 개략도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5호] 1부(필수) ·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6호] ·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여부 약약서[서식7호]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필수) · 청렴서약서 [서식11호] 1부(필수) ·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년 재무제표(발급가능한 해),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예비 창업자	· 사업 참가신청서[서식1호] 및 사업계획서[서식2호], 비즈니스개략도, · 개인(기업)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 동의서[서식5호] 1부(필수) ·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6호] ·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여부 약약서[서식7호] · 사업자 설립약약서 [서식9호] · 지식재산권 분쟁 책임동의서 [서식10호] 1부(필수) · 청렴서약서 [서식11호] 1부(필수), · 신분증사본 ·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사실 증명원 →국세청홈텍스발급 ※ 증명받고자하는 내용 : ‘발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과 폐업 기간 확인 (폐업후 3년, 부도 또는 파산시 2년 경과) · 국세 및 지방세 (완납)납부증명서 발급 제출

※ 신청서식은 기업/단체/예비창업 등 각 분류에 해당하는 서식과 엑셀서식 다운로드후 신청서 작성·업로드

4

선정절차

○ (선정절차)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1차 서류평가 : 운영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평가, 최종 선정 3배수 이내 선정

※ 소셜벤처 판별기업 가산점 3점 부여(※소셜벤처판별 통지서 제출기업 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11개 법 위반기업 총점의 20% 감점

- 2차 발표평가 : PPT 발표 평가, 최종 7개 과제 선정
운영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이내)평가 80% 및 서비스 이용객 사전 평가(확산가능성) 20% 합산

○ (서류평가 결과 통보) 2024. 4.2(화) 예정 (선정기업 개별 통지)

○ (최종 선정 통보) 2024. 4.22(월) 예정 (선정기업 개별 통지)

※ 상기일정은 예정일정으로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이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자(기업, 단체, 예비창업자)는 자동 선정 취소되며, 참여자에 대한 제재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사업화 지원금 집행현황)를 실시하여,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화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 사업평가 결과 사업화 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 운영규정」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지원대상 배제
- 사업자 선정후 과거 법위반 사실확인시(법위반사실여부확인서(서식) 내용과 상이)「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제한조례」제6조에 따라 사업취소·지원금 환수 및 3년간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제한
- 심사결과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

6 문의사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스케일업지원팀 (031-259-6099)

[별표 1]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지원제외 대상 및 업종

-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및 휴업중인 자
- ② 공고일 기준 창업기업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자
- ③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
 -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지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④ 당해 동일 유사사업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 ⑤ 기존 경기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았거나 중도포기한 자
- ⑥ 경기도 및 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지원사업)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수행중인 자(창업지원사업 중 창업교육, 시설·공간·보육 지원, 멘토링·컨설팅 지원, 행사·네트워크 지원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중단(중단처분, 중도포기자) 포함 ※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사업분류 기준 적용
- ⑦ 정부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대상으로 제재 중인 자
-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지원금·지원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구분	제외 대상 업종	코드번호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	91249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u>중소벤처기업부령</u> 으로 정하는 업종	-

*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기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중소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정2010.10.21. 규정 제 160호)

제12조(지원수혜자의 부당행위처리)

-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지원수혜자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한 후, 즉시 지원액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② 지원수혜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하여 사법기관 고발여부를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담당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2. 지원사업비 부당수취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당한 행위 또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준 경우
 4. 위법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기관의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법·부당행위의 증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부당수취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2.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3.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부당행위의 내용,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고발의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라도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발할 수 있다.
- ⑤ 고발은 원장 명의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감사부서의 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 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원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부당지원수혜자 제재)

- ① 제10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지원수혜자에 대하여는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에서 배제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영구히 지원대상에서 배제
 - 가.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 나.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다. 부당수취로 제재를 받은 자가 또 다시 부당수취 행위를 저지른 경우
 - 라. 그 밖에 행위의 내용,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영구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제재의 시점은 경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범죄혐의가 확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경기도 고시 제2024-22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9.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제외·유예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가. 제외·유예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 및 상황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 사업으로 전환하여 적용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적용제외·유예사업
 -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 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매칭(보조)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목적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❽ 폐기물관리법 ❹ 대기환경보전법 ❸ 소음진동관리법 ❹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❶ 지방세기본법
- 나.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건은 사실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변경)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법위반조회발급/법위반사실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위반사실로 제한기준 적용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이내 대상자는 소명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 나. 삭제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법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투자실 기업육성과(☎ 031-8030-2995)
- 붙임 1. (서식1)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서식2)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3. (서식3) 이의 및 구제신청서